

#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박철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박철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  
김원태, 김인제, 김형재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승진,  
박영한, 봉양순, 왕정순,  
유정인, 유정희, 윤종복,  
이병도, 이상욱, 이소라,  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 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 
전병주, 정준호, 한 신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’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,
-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
- 다. 기타 : 해당사항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